

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5. 24(금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공주택 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영혜, 사무관 홍승희·곽인영·박선영 • ☎ (044) 201-4533, 4479, 4531
	한국토지 주택공사	담 당 자	• 처장 김경철, 부장 최승창, 과장 김영석 • ☎ (055) 922-3361, 3363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26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매입·전세임대주택,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

- (사례1)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,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,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.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,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.
- (사례2)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,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.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,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.

□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.

- \* 매입임대주택 :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%로 임대  
 전세임대주택 :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,  
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~2%의 이자를 부담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급하는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‘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’의 후속조치로서,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우선,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.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,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.
  - \*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,  
(예) 보증금 470만원 / 월 임대료 16만원(주거급여) ⇨ 월 17.7만원(주거급여)
-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. 단,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.
  - \* (예)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, 월 15만원 ⇨ 보증금 180만원, 월 15.7만원  
전세임대 보증금 450만원, 월 14.2만원 ⇨ 보증금 225만원, 월 14.6만원
-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·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  - 매입임대주택의 경우,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(3,726호)이 예정되어 있다.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, LH 콜센터(1600-1044)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”면서, “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5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주거복지로드맵**

**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서 살맛납니다!**  
**매입·전세임대 취약계층**  
**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**

**무보증금 월세제도**

대상 | 생계·주거급여 동시 수급자

**실제 주거비**

**ZERO 원**

**보증금 X, 임대료 X**

- 보증금 없이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
-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

**보증금 부담완화제도**

대상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

**보증금 부담완화**

**보증금 완화**

- 일반 1순위 입주대상자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장애인(소득 70% 이하) 등
- 초기보증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인하 (임주자 희망시 보증금 증액 및 임대료 인하 가능)

※ 주거비 부담완화 대상자 및 공공주택 등 세부사항은 임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전·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부담완화제도는 적용됩니다.)



국토교통부



한국토지주택공사